

즉시항고장

항고인(피신청인, 피고)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○○지방법원 20○○카기○○○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. 같은 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을 명한 결정을 하였으나,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.

원결정의 표시

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합○○○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884,580원(팔십팔만사천오백팔십원)임을 확정한다.(항고인은 위 결정정본을 20○○. ○. ○. 송달받았습니다.)

항 고 취 지

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.

항 고 이 유

항고인(피신청인, 피고)이 부담한 감정료를 포함하여 상환을 결정한 원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즉시항고에 이른 것입니다.

2000. 0. 0.

위 항고인(피신청인, 피고) 〈★★〉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고등법원 귀중

제출법원	원심법원	제출기간	결정문정본을 수령한 ***** 부터 1주 이내
제출부수	항고장 1부 및 상대 방수 만큼의 부본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
	・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(민사소송법 제442조)		
불복절차	·즉시항고의 각하·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결		
및 기간	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주 이내 재항고하여야 함(민사소		
	송법 제444조)		
H] 용	·인지액 : ㅇㅇㅇ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		
	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기 타	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(민사소송법 제439조)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송비용